

「평창군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」

# 심 사 보 고 서

## 1. 심사경위

- 제안일자 및 제출자 : 2017. 3. 7(화) 평창군수(주민생활지원과장)
- 회부일자 : 2017. 3. 14(화)
- 상정일자 : 2017. 3. 14(화) 제226회 평창군의회(임사회)  
제1차 조례규칙심사특별위원회 상정·의결

## 2. 제안설명의 요지

(제안자 :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)

- 관련법률 제정 및 변경된 표준조례안에 따라 협의체의 조직, 운영 등의 근거 마련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여 체계적인 업무추진을 위함.

## 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

(전문위원 : 류지웅)

-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「사회보장급여의 이용·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」의 제정·시행(2015. 7. 1)에 따라 평창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조직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
- 주요 내용을 보면
  - 안 제2조에서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기능
  - 안 제3조에서는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
  - 안 제4조 및 제5조에서는 실무협의체, 실무분과의 기능
  - 안 제6조에서는 읍·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지원 요청
  - 안 제7조 및 제8조에서는 위원의 공개, 위원의 제척·기피·회피

- 안 제9조 및 제10조에서는 위원의 위촉 해제, 회의 등에 관하여 각각 규정하였음.

○ 검토의견

본 조례안은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7조의2에 따라 운영해 오던 평창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「사회보장급여의 이용·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」의 제정·시행에 따라 평창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개편하여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

조문 및 형식은 적정하게 작성되었으며,

상위법령 등에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조례 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6. 소수의견 요지 : 없음

7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**【붙임】** 평창군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.

## 평창군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평창군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### 평창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

**제1조(목적)** 이 조례는 「사회보장급여의 이용·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」 제41조제6항에 따라 평창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, 실무협의체, 실무분과 및 읍·면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조직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기능)** 평창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(이하 ‘대표협의체’라 한다)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건의하거나 평창군수(이하 “군수”라 한다)의 자문에 응한다.

1. 「사회보장급여의 이용·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」 제41조제2항 각 호의 사항
2.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18조제2항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이사의 추천
3. 군수가 지역사회보장 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4. 그 밖에 지역사회 보장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

**제3조(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)** ① 대표협의체의 효율적인 심의·자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② 전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, 위원장은 대표협의체의 위촉직 위원장이 된다.

③ 위원은 대표협의체의 위원 중에서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, 주민생활지원과장, 보건사업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한다.

**제4조(실무협의체의 기능)** ① 실무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검토·협의한다.

1. 대표협의체에서 심의하는 안건에 관한 사항
2. 지역사회보장 관련 서비스의 제공 및 연계·협력에 관한 사항
3. 대표협의체로부터 검토를 지시받은 사항
4. 그 밖에 실무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

② 실무협의체에 부위원장을 둘 수 있고, 부위원장은 공무원인 위원 중 호선한 1명과 위촉 위원 중 호선한 1명으로 한다.

**제5조(실무분과의 기능)** ① 실무분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다.

1. 실무협의체에서 검토하는 안건에 관한 사항
2. 지역사회보장 관련 서비스의 제공 및 연계·협력에 관한 사항
3. 실무협의체로부터 검토를 지시받은 사항
4. 그 밖에 실무분과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

② 실무분과는 분야별로 분과장 1명 및 총무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③ 실무분과의 위원은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이 지역사회보장 관련 분야 종사자 중에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.

④ 실무분과의 분과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
**제6조(읍·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지원 요청)** 읍·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표협의체에 전문가 자문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.

**제7조(위원의 공개)** 군수 또는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이 대표협의체 또는 실무협의체의 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한 경우 그 위원의 명단을 군보와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해야 한다.

**제8조(위원의 제척·기피·회피)** ① 대표협의체, 실무협의체 및 읍·면 협의체(이하 ‘각 협의체’라 한다)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협의체의 심의·의결에서 제척(除斥)된다.

1.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(당사자가 법인·단체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
2.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
3.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, 연구, 용역(하도급을 포함한다. 이하 이 항에서 같다),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
4.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·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

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·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,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.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.

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·의결에서 회피(回避)해야 한다.

**제9조(위원의 위촉해제)** 군수 또는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각 협의체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.

1. 정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
2.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
3. 직무태만,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4.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
5.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

**제10조(회의)** ① 각 협의체 및 실무분과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, 정기회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소집한다.

1. 대표협의체 : 연 4회

2. 실무협의체,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실무분과 : 연 6회 이상

② 전문위원회 및 실무분과의 회의에 관하여는 대표협의체의 회의에 관한 사항과 동일하게 적용한다.

**제11조(관계기관에 대한 협조요청)** 각 협의체, 전문위원회 및 실무분과(이하 '각 협의체 등'이라 한다)가 심의·자문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·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

**제12조(공청회 등의 개최)**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회의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청회 또는 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다.

**제13조(수당 등)** 각 협의체 등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 할 수 있다. 다만,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참석한 경우에는 제외한다.

**제14조(운영세칙)** 각 협의체 등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의 의견을 거쳐 협의체의 위원장이 정한다.

## 부칙

**제1조(시행일)**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**제2조(경과조치)** 이 조례에 따라 구성된 평창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7조의2에 따른 지역사회복지협의체로 본다.